



# 달라진 가족법



김상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 1. 가족관계도 법률에 정해져있다.

가족이란 말은 듣기만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대개 가족이라는 말에는 한핏줄, 한지붕 한솥살 림, 하늘이 맺어준 인연(天倫)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에는 웃어른, 동기간, 부부, 3촌, 4촌, 일가, 친척, 인척 등을 연상하게 된다. 아울러 호주, 장남, 상속등의 용어와 함께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며 크고작은 문제로 불화를 겪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간의 문제에 대한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다. 가족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중 친족 상속편에 가족제도와 가족간 상호관계, 상속문제의 처리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 2. 가족법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조선시대 정치제도와 일상생

활의 규범이던 유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가장중심의 가족제도와 남성우위의 사고방식, 품위와 예절을 중시한 관행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일제침략으로 일본민법을 적용받게 되었고 1960년에 새로운 민법을 만들어 우리만의 가족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민법에도 남녀간 불평등, 장남중심의 가계와 상속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던것이 지난 89년에 많은 부분을 개정해 91.1.1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민법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똑같게하고 호주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친족의 범위를 새로 정했다. 이는 가정내의 민주화와 산업사회에 대한 적응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족의 범위가 달라졌다.

○. 8촌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아버지쪽 8촌, 어머니쪽 4촌을 친족으로

했는데 이제는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으로 통일한 것이다.

○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결혼할 경우 남자는 부인쪽으로, 부인은 남편쪽으로 4촌까지가 친족이 되는 것이다. 전에는 여자의 경우 남편의 친족은 모두 여자에게도 친족이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장인, 장모만 남자의 친족이 되었던 것을 남녀가 평등하도록 고친 것이다.

○ 재혼하면 종전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남은 사람이 재혼하면 그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맺어졌던 친족관계는 모두 없어지고 이것은 남녀간의 구별이 없다. 종전에는 남자가 재혼해도 전처의 부모는 여전히 남자의 친족으로 남았었다.

○ 계모자 관계와 서모자 관계를 없앴다.

예전에는 계모와 전처소생자녀와의 관계나 부인이 외의 여자(첩등)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서자녀)가 모두 법적으로 계모, 또는 본부인의 자녀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없앤 것이다. 이것은 본부인이나 계모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여자가 자신의 소생이 아닌 자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도록 한것이며, 만약 여자가 특별히 아들로 삼으려면 입양절차를 거치면 가능해진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로 바뀌었다.

○ 부부가 사는곳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자쪽 집에서 살수도 있고 만약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할수도 있다.

○ 부부의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예전에 부부의 공동생활비를 남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경우 여자의 가사일은 가사노동으로 보아 품삯을 계산하게 된다.

○ 친권은 부부가 똑같다.

나이어린 자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 하는데 종전에는 아버지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 생모와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수 있다.

정식부인이 아니지만 자녀를 가졌을때 생모는 자녀의 아버지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부부가 이혼하였더라도 이혼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친권을 가질수 있게한 것이다. 종전에 서모라하여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없었던 것과 이혼한 어머니가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여성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 이혼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경우라도 다른 한편이 자녀를 만나고 편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등의 면접 교섭권이 새롭게 생겼다. 다만 범죄, 방탕한 생활등으로 자녀에게 나쁜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가정의 재산은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 청구할수 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호주제도도 달라졌다.

○ 호주상속이 아닌 호주승계이다.

호주제도는 옛날의 대가족제도에서 내려온 유습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지위가 상속되던 것을 승계로 고치고 그 순위는 아들 1순위, 딸 2순위, 아내 3순위, 어머니나 할머니 4순위, 며느리 5순위로 하였다.

○ 장남이라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 여자라도 호주가 될 수 있다.

○ 양자입양제도가 달라졌다.

호주가 사망한뒤에 입양되는 사후양자나 유언양자가 없어졌고, 사위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도 없었으며 장남도 다른집의 양자로 갈수있도록 하였다.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많이 줄였다.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별없이 같아졌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아들과 딸의 구별없이 자녀는

모두 1씩을, 배우자는 1.5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로 줄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되는 범위가 8촌이었으나 이제는 4촌까지만 상속권이 주어진다.

○ 결혼한 딸이 자녀가 없이 사망한 때에는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는다.

○ 효자나 공로자는 우대받는다.

여러 자녀 중 특별히 부모를 잘 부양한 사람이나 부모의 재산을 키우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기여분제도) 또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정성껏 돌보고 간호한 사람이나 만년에 동거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 재산을 떼어줄 수 있게 하였다.(특별연고자 분여제도)

### 3. 생각해 보아야 할 일

가족법이 새롭게 바뀐 것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것으로서 당연한 흐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과 달리 가족법은 가정안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 조문을 들먹이거나 법전을 찾아가며 시비곡직을 가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 설명한 것들은 상식적인 판단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은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간의 대화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누구나 남녀평등의 정신과 그 이유, 구체적인 실천방법, 생활화된 차별관행의 타파와 교정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 여성들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인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표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하는 사람만이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녀차별은 남성중심 사회 탓이었지만 앞으로의 남녀차별은 여성의 무능과 소극적 자세에서 비롯된 자기탓임을 알아야 한다. 즉 법률과 제도에는 남녀 차별이 없으므로 남녀차별 관행과 현실은 자신의 책임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가족간의 모든 일은 사랑과 존경에 바탕을 두고 양보와 태협으로 끝내야 한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가족인데 그 안의 일을 법의 기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물어서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빌리는 것이 옳다. 혼자만의 지혜는 자칫 고집이 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족간의 문제라도 혼자 힘으로 또는 가정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언제라도 농협을 통해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에 따른 무료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고 또 묻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된다.

## 좋은 게 좋은 거라구요

전라북도 완주, 용산마을에 사는 김씨는 걱정이 많았다.

해마다 마을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이가 없어 초등학교까지 폐교될 거라는 소문에는 그만 조바심까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봄, 도시에 살던 젊은 내외가 용산마을로 이사를 온다고 하자 자기 일처럼 흐뭇하였다.

평소에도 마을의 굿은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씨인자라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젊은 내외의

이삿짐을 날라주었다.

젊은 사람들의 실림살이 치고는 낡고 초라한 것이 많았지만 김씨는 그것도 모두 검소하고 성실한 것으로 느껴져 맘에 들었다. 이것저것 깨어질 만한 것들을 먼저 조심히 들여놔주고 싱크대를 옮기기 위해 등에 맨 순간, 손에 잡았던 싱크대 다리가 힘없이 부스러지는 것이 아닌가.

'무척 낡았구나. 나무토막을 꺾어 못질이라도 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데 뜻밖에도 젊은이 내외는